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소양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9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11일
발 의 자 : 김소양 의원(1명)
찬 성 자 : 권수정, 김소영, 김진수,
김화숙, 박기열, 봉양순,
성중기, 신정호, 여 명,
오현정, 이석주, 이성배,
이승미, 이종환, 홍성룡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에 근거하여 중증 장애인 세대의 수도요금 감면 시행을 통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
현행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,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음
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함 (안 제34조제1항제11호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: 10세제곱미터
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4조(감면)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.</p> <p>1호~10호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11. 그 밖에 화장실을 개방하는 등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: 해당 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</p>	<p>제34조(감면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호~10호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1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: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</u></p> <p>12. 그 밖에 화장실을 개방하는 등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: 해당 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</p>

문서번호	2021080300000002
------	------------------

비용추계서

요청인 : 김소양 의원	담당 :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박주용 예산분석관
접수일 : 2021.08.03	
회신일 : 2021.08.05	내용문의 : 02-2180-7954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목 차

- I. 비용추계 요약
-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조(감면)제1항제11호 신설에 따라 세입감소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안 제34조제1항제11호에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면제

나. 전제

- 면제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세대수는 2020년 한국전력 ‘서울지역 중증장애인 전기요금 할인세대(’20.1~12월)’ 평균으로 추계하되 비용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제

다. 추계기간

- 2022~2026년으로 함(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발생)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 비용 ≒ 24,891,360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2022	2023	2024	2025	2026	합계
세입	중증장애인 면제 (안 제34조제1항제11호)	△4,978,272	△4,978,272	△4,978,272	△4,978,272	△4,978,272	△24,891,360
	소계 (a)	△4,978,272	△4,978,272	△4,978,272	△4,978,272	△4,978,272	△24,891,360
세출	-	-	-	-	-	-	-
	소계 (b)	-	-	-	-	-	-
□ 총 비용 (b-a)		4,978,272	4,978,272	4,978,272	4,978,272	4,978,272	24,891,360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
담당관
추계세제팀장
예산분석관

예산정책담당관
조도형
이원상
박주용

☎ 02-2180-7954

e-mail : pjooyong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조(감면)제1항제11호 신설에 따라 세입감소 발생

2. 세부추계내역

- 중증장애인 세대 면제 = 24,891,360천원
= 중증장애인 세대수 × 면제량(m³) × 하수도요금(400원/m³) × 12월 × 5년
= 103,714세대 × 10m³ × 400원/m³ × 12월 × 5년
- ※ 중증장애인 세대수 : 2020년 한국전력 ‘서울지역 중증장애인 전기요금 할인세대(’20.1~12월)’ 평균